

8.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 6. 30.

개 정 이 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9. 5. 9, 대통령령 제16284호)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울러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령 제6조제4항).
- 나.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줌(령 별표1)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중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

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1의 표(비고외의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용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 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 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직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
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
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
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
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
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